#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청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482 발의연월일: 2020. 12. 15.

발 의 자:정청래·이용우·김병주

임호선 · 홍성국 · 이원택

김민철 • 주철현 • 최혜영

오영환 · 장철민 · 신현영

이수진 · 임오경 · 한준호

김남국 · 장경태 의원

(1791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. 그러나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.

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 력할 필요가 있음.

이를 위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 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 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19조 제3항).

## 법률 제 호

##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9조제3항 중 "지불"을 "지급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	제19조(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
치) ① ~ ② (생 략)	치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	③
해당하지 아니하는 재외국민이	
제1항 본문에 따라 자신이 부	
담하여야 할 비용을 즉시 <u>지불</u>	지급
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외위	
난상황으로부터 해당 재외국민	
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	
기 위한 수단을 투입하는 경우	
에는 그 비용을 대신하여 지급	
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재외	
국민은 외교부장관이 합리적인	
범위 내에서 청구하는 비용을	
상환하여야 한다.	
④ ~ ⑤ (생 략)	④ ~ ⑤ (현행과 같음)